

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116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10월 16일
발 의 자 : 이영실, 김종무, 임종국,
김태호, 정진술, 문장길,
김경영, 박기재, 박순규,
이은주, 송아량, 이승미
의원 (12명)

1. 제안 이유

- 학교 주변 등에서 과속 및 음주운전 등을 위한 원인으로 한 교통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통행 빈도가 높은 통학로를 보행 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보행안전을 강화하는 한편, 등·하교 시간 등 어린이의 보행이 많은 시간대에 보행환경개선지구 주변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운행 등을 위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가.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 . (안 제 6조의2)

3. 참고 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등) ① 시장은 어린이의 통행 빈도가 높은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, 서울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 등과 협의하여 차량속도 저감 시설, 횡단보도 및 교통섬,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통학로에서 어린이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,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등·하교 시간대 등 어린이의 통행 빈도가 높은 시간대의 통학 안전을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 주변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함양 및 안전운행 등에 관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6조의2(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등) ① 시장은 어린이의 통행 빈도가 높은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, 서울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 등과 협의하여 차량속도 저감시설, 횡단보도 및 교통섬,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통학로에서 어린이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,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</u></p>

경우 등·하교 시간대 등 어린이의 통행 빈도가 높은 시간대의 통학 안전을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 주변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함양 및 안전운행 등에 관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의2(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등)을 신설함에 따라, 보행환경 개선사업 비용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

- 보행환경 개선사업 비용

나. 전제

- 어린이의 통행빈도가 높은 통학로는 유치원, 초등학교, 어린이집 등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할 것이므로, 어린이보호구역 주변부터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것을 전제
 - '19년 6월 기준,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1,947개소(유치원 858개소, 초등학교 602개소, 특수학교 24개소, 보육시설 463개소)
- 기존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사업은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,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개선지구 역시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전제
- 본 사업은 1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전제
-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개선지구는 연간 2건이 지정되는 것으로 전제
 -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개선지구는 '19년 사업대상 16개소의 10% 이상 (1.6개) 지정되는 것을 가정
 - '19년도 역세권 보행환경개선지구 자치구 공모사업은 1년 사업 11개소, 2년 사업 5개소 추진
-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공사비가 소요되는 되는 것으로 가정
- 안 제6조의2제4항에 따라, 보행환경개선지구 주변차량 운전자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함양 및 안전운행 등에 관한 홍보 등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

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,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교통지도반을 활용하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비용에서 제외

다. 추계기간

- 5년(2020년부터 2024년)

라. 방법

- ‘19년도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의 예산 적용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총 비용 ≙ 5,112,500천원(연평균 1,022,500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연도					합계
		1차년도 (2020)	2차년도 (2021)	3차년도 (2022)	4차년도 (2023)	5차년도 (2024)	
세입	-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보행환경 개선사업 비용 (안 제6조의2)	1,022,500	1,022,500	1,022,500	1,022,500	1,022,500	5,112,500
	소계(b)	1,022,500	1,022,500	1,022,500	1,022,500	1,022,500	5,112,500
□ 총 비용(b-a)		1,022,500	1,022,500	1,022,500	1,022,500	1,022,500	5,112,500

* 물가상승률 미반영, 천 원 미만 반올림

4. 덧붙이는 의견

- 의견 없음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 담당관 남승우
 정책조사팀장 여차민
 분석관 이수아

☎ 02-2180-7944

e-mail : sua8873@seoul.go.kr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
- 보행환경 개선사업 비용

2. 세부추계내역

- 보행환경 개선사업 비용 ≙ 5,112,500천원

- 산출방식 $\sum_{i=1}^5$ (연간 보행환경개선사업비용)_i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20~2024년)

- 연간 보행환경 개선사업 비용 ≙ 1,022,500천원

= (개소당 기본 및 실시설계비 + 개소당 공사비) × 지정건수

= (51,000천원 + 460,250천원) × 2건